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교육생 수칙

제정 2010.5.12.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2호

개정 2012.7.27.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14호

개정 2013.5.31.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19호

개정 2016.1.20.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27호

개정 2016.6.1.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0호

개정 2017.4.19.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4호

개정 2019.12.23.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6호

일부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훈령 제 4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학칙 규칙」(이하 “학칙”으로 한다) 제10조 규정에 따라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 확립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제2조(교육생 준수) 교육생은 본 수칙에 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 및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기간 중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생자치회 편성) ① 과정별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생의 권익을 위하여 교육생자치회를 편성하되, 교육 인원과 기간을 고려하여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생자치회장(이하 ‘학생장’이라 한다)은 교육생 중 희망자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교육생을 대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육용시설물 등 사용) ① 교육생은 교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항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학교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변상케 할 수 있다.

제2장 예절 및 용모·복장

제5조(예절) ① 교육생 및 상·하급자 동료 간에는 상호예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복(훈련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거수경례로 하고, 구호는 “안전”으로 한다(사복을 착용한 경우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제외하고는 상체를 약15도 숙여 목례를 한다)

③ 단체 활동 및 이동 중 교직원 및 상급자를 만날 시에는 대표자가 “전체 차렷”이라는 구령과 동시 단독으로 경례를 한다.

④ 삭제

제6조(용모 및 복장) ① 교육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머리카락은 귀에 닿지 않게 단정히 하여야 한다.(남성)
2. 과도한 화장을 금하고, 긴 머리는 묶어 단정하게 한다.(여성)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나치게 긴 머리카락, 파마, 염색 등을 금지한다.
(남·여 공통)

4. 반지, 귀걸이 등 장신구는 교내에서 착용하지 않는다.

② 교육생의 복장은 통일된 제복 차림을 원칙으로 하며 차림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복

가.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입교식, 졸업식(수료식) 등 행사에 참석할 때

다.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2. 근무복

가. 학과의 학습활동에 참석할 때

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3. 기동복(활동복, 훈련복 포함)

가. 학과 중 실기실습 등 훈련활동에 참석할 때

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4. 체육복

가. 운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석할 때

나. 생활관내에서 활동할 때

다.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5. 사복

가. 외출, 외박을 할 때

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③ 제복의 차림새와 하복·동복 착용기간의 구분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다.

제6조의2(시보임용예정자의 책무) 시보임용예정자로서 교육에 입교한 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7조(이름표 등) 교육생은 개인별로 별표 1의 이름표를 패용하고 학생장·안전순찰근무자는 별표 2의 표장을 패용한다.

제3장 생활 및 일과

제8조(일과) 교육생은 별표 3의 일과표에 의거 일과생활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상) 기상은 일제신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상과 동시 침구 및 생활실을 정돈한 후 점호장소로 집합한다.

제10조(점호)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며 별표 4의 점호요령에 의거 실시한다.

제11조(환경정리) 생활실별로 담당 청소구역에 대하여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여야 한다.

제12조(흡연) 교육생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제13조(생활지도점검) ① 생활지도점검은 생활관, 교육장 및 담당 청소구역에서 인원, 청소, 정돈상태 등을 교육기획과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행하거나 점검관을 지명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활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

우 재점검을 실시한다.

제14조(수업) 학생장은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차렷”, “교육준비 끝” 강의가 끝나면 “교육 끝”이라고 교과목 담당 교수요원에게 보고한다.

제15조(취침 및 소등) ① 취침은 일과표에 의해 실시하고 타 교육생의 취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② 취침 후에는 일제히 소등하고 지도교수의 승인 없이 점등하지 못한다.

제16조(비상훈련) 특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비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일과 외 생활

제17조(휴가) 교육생의 휴가는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 또는 귀교 후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외출 · 외박 · 조퇴 등) ① 학교장은 정기외출 · 외박 · 조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운영규정」 제54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 제한할 수 있다.

1. “외출”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신임교육과정은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22:00까지로 하고, 입교 3주 이후부터 시행한다.

나. 타 교육과정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22:00까지로 하고 입교일부터 시행한다.

2. “외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금요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다음주 월요일 학과 개시 전 까지로 한다.

나. 공휴일은 전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공휴일 다음날 학과 개시 전까지로 한다.

다. 비합숙 전문교육과정(신임교육과정은 제외한다) 등의 경우 일과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학과 개시 전까지로 한다.

② 교육생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응시, 병원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출·외박·조퇴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외출·외박·조퇴 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육생으로서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1. 용모 및 복장단정
2. 법규위반 행위금지
3. 퇴폐업소 출입금지
4. 귀교 시 주류 반입 금지
5. 행선지 명시 및 귀교시간 엄수
6. 음주운전 금지
7. 기타 공무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제18조의2(면회) ① 학교장은 면회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생의 가족,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면회를 통보 받은 교육생은 면회에 임할 때와 면회를 마친 때에는 **지도교수**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세탁) ① 생활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 등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탁물은 생활관 등 지정된 장소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제20조(교육생의 진료) 교육생은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도교수**(부재시 당직근무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21조(매점 등 이용) ① 교육생은 간식, 물품 등 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매점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② 매점 이용시간은 자유시간 또는 일과이후 휴식시간에 한 한다.

제22조(음주) 교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 외에는 주류를 반입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사·축제·단합대회 등 필요 시 학교장의 사전허락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도서실 이용) ① 교육생은 학습을 위하여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도서실 이용시간은 자유시간 또는 일과이후 휴식시간에 한 한다.

제24조(퇴교 및 감점) ① 학교장은 직권퇴교 사유 시 퇴교의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학칙 제11조에 따라 교육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모든 교육생은 교내외 생활에 있어서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자는 별표6의 감점기준에 의하여 조치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생활평가 결과 감점의 합계가 30점 이상일 경우 또는 결강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가산점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 점수는 가산점 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퇴교기준 발생 시 가산점과 상계하지 아니한 순수 감점으로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감점 부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이의가 있는 교육생은 감점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학칙이나 교육생수칙 등 근거 없이 감점을 부과한 경우

2.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감점을 부과한 경우

3. 그 밖의 감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상담 및 건의) ① 교육생은 학습 및 교내·외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교육진행 담당자나 **지도교수**에게 상담 및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 및 건의사항을 접수한 교육진행담당자 등은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담업무는 학과 중에는 교육진행담당자가 학과 종료 후에는 생활지도관이 전담한다.

④ 교육생과 상담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기록하며 상담기록부 및 상담카드를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교육생의 신분이 소방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경우에도 이 수칙을 준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48호,2023.6.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교육생 수칙 【별표 1】

제 00 기 ○○○○반	
○○소방 서	
교 번	성 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 명찰형

※ 바탕은 교육과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글씨는 청색

□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교육생 수칙 【별표 2】

1. 학생장



※ 가로 7cm, 세로 3cm

※ 청색 바탕, 글씨 및 줄은 흰색

2. 안전순찰근무자



※ 가로 7cm, 세로 3cm

※ 청색 바탕, 글씨 및 줄은 흰색

□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교육생 수칙 【별표 3】

일 과 표

구분	일 과	시 간 배 정		
		신임과정	전문과정	소요시간
오 전	기 상	06:30 ~	06:30 ~	
	아침점호 및 심신단련	06:30 ~ 07:00	06:30 ~ 07:00	30
	세 면	07:00 ~ 07:20	07:00 ~ 07:20	20
	아 침 식 사	07:20 ~ 08:00	07:20 ~ 08:00	40
	자 율 학 습	08:00 ~ 08:40	08:00 ~ 08:40	40
	환 경 정 리	08:40 ~ 08:50	08:40 ~ 08:50	10
	학 과 출 장	08:50 ~ 09:00	08:50 ~ 09:00	10
	오 전 학 과	09:00 ~ 11:50	09:00 ~ 11:50	170
오 후	점 심 식 사	12:00 ~ 12:50	12:00 ~ 12:50	50
	학 과 출 장	12:50 ~ 13:00	12:50 ~ 13:00	10
	오 후 학 과	13:00 ~ 16:50	13:00 ~ 16:50	230
	자 유 시 간	16:50 ~ 17:30	16:50 ~ 17:30	40
	저 녁 식 사	17:30 ~ 18:30	17:30 ~ 18:30	60
	자율학습 및 외출	17:00 ~ 21:50	17:00 ~ 21:50	290
	점 호 준 비	21:00 ~ 21:30	22:00 ~ 22:30	30
	저 녁 점 호	21:30 ~ 21:50	22:30 ~ 22:50	20
	소 등	22:30 ~	23:00	—
	취 침	23:00 ~	23:30	—

주1) 신임과정 정기외출 시 외출이후 일과 시간은 전문과정과 동일하게 적용

주2) 소등이라 함은 생활실을 제외한 복도, 외부 등 전등 소등을 말함

주3) 동절기 기상 등을 고려하여 일과를 조정할 경우 조정하는 일과표 적용

점 호 요 령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한다.

1. 아침점호

아침점호는 기상신호가 나면 신속한 동작으로 침구를 정돈하고 용모 복장을 갖춘 후 점호장소에 집합한다.

생활지도교수 : 생활관 앞에 선다.

학생장 : 각 과정별로 단상 앞에 집합시켜 인원파악 후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반 제○기 아침점호 인원보고

- 총 원 : 명
- 사 고 : 명(사고 없음)(사고내용: 외출 ○명, 외박 ○명)
- 현재원 : 명
- 열 외 : 명 열외는 (환자, 특별휴가 등)

보고자 1명 외 점호준비 끝.

지도교수 : 각 과정별 보고가 끝난 후

○○○○년 ○월 ○일 아침점호를 시작하겠습니다.

- 전체 뒤로 돌아 - 반 우향우,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애국가 제창, 끝나면 - 전체 반 좌향좌, 뒤로 돌아
- 생활지도관의 선창에 의거 공무원 신조 - 낭독, 끝나면
- 체조실시 후 구보를 실시한다.

학생장 : 점호 끝 복창 후 생활관 및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한다.

2. 저녁점호

저녁점호는 점호준비라는 예령에 각 생활실별로 준비완료하고 생활실장은 출입구 앞에 정렬한다.

지도교수 : 전 교육생을 생활실별로 집합시켜 학생장이 각 생활실별로 인원을 파악토록 한다.

학생장(실장) : 각 생활실별로 인원파악이 끝난 후

(경례 후) 제○○기 ○○반 인원보고

- 총 원 : 명
- 사 고 : 명
- 현재원 : 명
- 열 외 : 명(열외는 환자, 특별휴가 등 명)

보고자 1명 외 점호준비 끝.

지도교수 : 각 과정별로 인원보고를 받은 후 점호는 ○○생활실부터, 점호를 받지 않는 생활실은 열중 쉬어

지도교수 : 점호가 끝났으면 처음의 위치로 돌아와서 이상 점호 끝이라고 구령

학생장 : 점호 끝 복창 후 전달사항 전달 및 취침 지시

·생활지도관의 점호 시 **학생장**은 생활지도관 수행

·자율점호로 **학생장**이 점호를 취할 시는 위 요령에 의거 실시

3. 비상점호 : 비상점호는 생활지도관이 불시에 인원파악 등 필요에 따라 위 요령에 의거 실시한다.

가점 기준표

□ 가점기준

<u>가 산 점</u> 내 용	가산점	비 고
. 학생대표 및 보조자	10점	
. 선행 등 대외적 명예 고양	10점	
. 기타 모범활동(타의 모범)	5점	
. 분임토의 우수교육생	5점	
. 교내행사 등 유공자	5점	
. 화재예방 및 응급환자 조치 유공	5점	
. 모범생활실	3점	
. 환경미화 솔선	3점	
. 그 밖의 선행	2점	

- 가점 기준은 생활평가점수에 포함한다. 단, 생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평가 총점에 포함한다.
- 가점의 점수는 총점의 5%를 넘지아니한다.
예) 총 1,000점 만점의 경우 50점을 넘지 아니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교육생 수칙 【별표 6】

생활평가 감점 기준표

구 분	위 반 내 용	감 점(1일최대)		비 고
입 교	·입교시간 위반	1 시간당	2(10점)	<개정 2023. 5.>
수 업	·무단결강	1 시간당	10(30점)	<개정 2023. 5.>
	·승인결강	1 시간당	1	
	·수업시간 위반(20분 이내)	1회	2	
	·수업분위기 저해	1회	5	
	·강의실 내 휴대폰 사용(지참)금지	1회	5	
	·수업참여도 부족	1회	5	<개정 2023. 5.>
	·태도불량	1회	2	<개정 2023. 5.>
평 가	·자습분위기 저해	1회	2	
	·시험태도 불량	1회	10	
외 출 박	·부정행위	1회	20	
	·무단외박	1회	30	<개정 2023. 5.>
	·무단외출	1회	10(30점)	<개정 2023. 5.>
	·승인 외출 외박 후 귀교시간 위반	1 시간당	2(10점)	<개정 2023. 5.>
점 취 호 침	·비합숙과정 등교시간 위반	1 시간당	3	<개정 2023. 5.>
	·점호불참	1회	10	
시 설 물 관 리	·점호시간 위반	1회	5	
	·점호태도 불량	1회	5	
	·취침방해 및 취침.기상 시간 위반	1회	5	<개정 2023. 5.>
근 무	·청소 및 생활관 관리 위반	1회	2	
	·교내 시설물 등 고의 훼손	1회	20	
음 주 연	·근무결락	1회	5	<개정 2023. 5.>
	·근무태만	1회	2	<개정 2023. 5.>
	·근무장소 이탈	1회	3	<개정 2023. 5.>
	·근무시간 위반	1회	2	<개정 2023. 5.>
예 품 질 위	·음주 후 교내외 추태행위	1회	30	<개정 2023. 5.>
	·지정장소.시간 외 음주행위	1회	20	
	·생활관내 주류 반입	1회	20	
	·생활관내 흡연	1회	20	<개정 2023. 5.>
	·지정된 장소 외 흡연	1회	5	<개정 2023. 5.>
기 타	·교내외 심각한 명예훼손	1회	퇴교	<개정 2023. 5.>
	·폭력행위 및 성비위 관련	1회	퇴교	
	·교내외 음주운전 행위(적발시)	1회	퇴교	
	·품위손상	1회	퇴교	
	·위계질서 문란, 싸움행위	1회	20~퇴교	<개정 2023. 5.>
	·욕설 및 소란행위	1회	20~퇴교	<개정 2023. 5.>
	·사행성 행위	1회	30~퇴교	
	·컴퓨터 등 도박행위	1회	30	<개정 2023. 5.>
	·교수요원 모욕, 욕설	1회	30	<개정 2023. 5.>
	·교직원 등 결례	1회	20	<개정 2023. 5.>
	·용모·복장 불량	1회	3	
	·교수 및 교직원 등의 지시사항 위반	1회	5	<개정 2023. 5.>
공 사 통 항	·허위신고 등	1회	10	<개정 2023. 5.>
	·보고 지연 및 누락	1회	5	<개정 2023. 5.>
공 사 통 항	·교내 주차위반	1회	3	<개정 2023. 5.>
	·일과시간 위반	1회	3	<개정 2023. 5.>
	·무단 전열기 사용	1회	5	<개정 2023. 5.>
	·「30~퇴교」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는 교육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심의·의결한다.			
	·기관통보 : 누적감점 30점 이상 또는 결강사항			
	·퇴교 - 위 사항이외 누적감점 60점 이상, 소속기관 통보 및 퇴교 조치			
	단, 교육기간 4주 이하 과정의 경우 40점 이상 퇴교조치함.			
공 사 통 항	·시간단위 감점의 경우 60분 미만의 경우 1시간으로 한다.			
	·승인결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점 상계는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수업분야의 항목 중 무단결강과 승인결강을 제외한 위반사항은 학교 평가관리규정 (별표2-1)에 따른 학습.참여평가에 반영할 경우 생활평가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각 감점은 입교일부터 퇴교일 까지 누적관리 한다.(단, 퇴교사실은 제외)			
	·교육생수칙 생활평가기준은 위탁교육 및 비 합숙 과정에도 적용			

감점부과 이의신청서

			결	담 당	과 장	학교장
			재			
과정명	과정	반	교 번			
소 속			성 명			
감점부과 일 자						
감점부과 내 용						
이의신청 사 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상 담 기 록 부

일 시	상 담 내 용	조 치	상 담 관

□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교육생 수칙 【별지 3】

개 별 상 담 카 드					
과정명	제 기	반	교 번		성 명
상 담 내 용					
상담일시	내 용		의 견		비 고